

I. 첫머리에

프랑스 언론은 1881년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에 의해 그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이 법률은 1798년 8월 26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1조¹⁾를 성문화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천명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텍스트로 인정받고 있다(박진우, 2007).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은 137년 동안 51번 개정을 거쳤고, 오늘날에도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동시에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법은 언론에게 정보 제공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이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안문희, 2017).

가장 최근의 개정은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Loi n° 2017-86 du 27 janvier 2017 relative à l’égalité et à la citoyenneté, 이하 평등 및 시민권 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평등을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는 이 법은 1881년 언론법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법이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한 주요 행위들과 이러한 남용에 대해 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인 피해구제책, 즉

*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minjjin@gmail.com

1) 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개정된 언론법의 주요 조항 및 언론법 개정 방향과 2018년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둘러싼 주요 논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프랑스 언론법의 특징은 ‘언론 자유의 남용’ 혹은 ‘언론 자유의 원칙 위배’에 해당하는 언론의 행위를 대단히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는 크게 허위 뉴스,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의 전달, 그리고 선동적인 발언 등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Dreyer, 2018). 허위 뉴스는 말 그대로 사실에 근거 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의 전달은 명예훼손, 중상, 모독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범죄(추정)자 혹은 범죄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동적인 발언에는 테러나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 밖에도 언론 자유의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나, 극히 드물기에 여기에서는 이 세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1. 허위 뉴스

일반 형법에서 정보의 왜곡은 넓은 의미에서 가장 다양한 범죄 유형의 근원이다(Bilger, 2003). 그러한 범죄의 예로는 허위광고, 선거기간 동안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생산된 허위 뉴스, 공중이 테러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허위정보 전달 등이 있다.

당연히 1881년 법은 ‘허위 뉴스(fausse nouvelle)’라는 개념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마련해야 했다. 언론법 제27조는 허위 뉴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 뉴스, 또 다른 하나는 군의 사기를 흔들거나 국가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는 성격의 허위 뉴스다. 이러한 허위 뉴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과의 연관성

제27조의 “뉴스”는 감상, 논평, 판단 또는 견해와 구별된다. 뉴스는 현재 벌어지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을 때만 구성되며, 이는 주장된 사실을 입증할 물리적 자료 또는 객관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이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때로는 허위 뉴스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누락돼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당연히 뉴스의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

(2)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

원래 제27조는 “공공의 안녕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허위 뉴스에 대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유죄판결의 조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44년 5월 6일 명령(L'ordonnance du 6 mai 1944)에 의해 이 조항이 보완되면서 오늘날에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다(Bilger, 2003).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공공질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 뉴스는 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악의적인 의도

언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는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 제27조는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된” 출판, 배포 또는 복제만을 처벌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둘러싸여 있고, 신속하게 뉴스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집국에서 체계적인 정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법원 또한 경박함과 부주의를 그 자체로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형사 기소가 가능하려면 기만행위, 즉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입증해야 한다(Bilger, 2003).

(4) 허위 뉴스 전달시 기소와 양형

언론법 제27조는 일체의 수단을 통한 허위 뉴스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출판, 유포 또는 복제한 경우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만약 해당 허위 뉴스가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군의 사기와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3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거짓 정보와 오보를 구별하고, 조작된 정보의 의도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박진우, 2007). 정치학자면서 표현의 자유 전문가인 제랄딘 뮐만(Géraldine Muhlmann)은 이 분야에서 유죄 판결이 드문 이유에 대해 거짓 뉴스보다 공정한 뉴스를 증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Muhlmann, 2018, 8, 9).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같은 법 제2조가 보장하듯 출처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제27조에서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2.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성요소

언론 자유의 위배 행위를 규정한 가장 대표적인 조항으로서 처벌 사례가 많은 것은 명예훼손이다. 1881년 언론법 제29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단체를 언급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발행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명시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비난을 담은 연설, 고함, 위협, 서면, 인쇄물, 벽보 또는 포스터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법 제29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 제기는 저널리스트의 주요 작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에게 해당된다. 또한 인쇄매체나 웹 사이트, 블로그, 토론방에서 비록 신중한 어조로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그것이 명확한 형태이건 혹은 교묘히 감춰진 형태이건,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Duhen, 2010, 12, 29).

물론 단순 질문만으로는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을 의혹 제기로 보는 것은 사상의 토론과 수사학의 근본적인 요소인 표현과 질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명예훼손의 예외: 진실 적시(Exceptio Veritatis)

언론이 진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진실 적시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면되었거나 또는 해당 법률에 의해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및 사생활 관련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다. 판례는 진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한다. 제출된 증거는 확실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 조목조목 진술되어야 한다. 진실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1%밖에 되지 않는다(Goetz, 2017, 6, 12).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포리슨이 르몽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다. 르몽드의 저널리스트인 아리안 슈망(Ariane Chemin)은 2014년 자신의 기사를 통해 포리슨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썼는데, 이에 대해 포리슨이 르몽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슈망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언들, 언론 기사들, 포리슨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포리슨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가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의 판결문 등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2017년 파리 지방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판은 재판부의 몫이 아니지만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포리슨이 지속적으로 지극히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유태인 학살에 대해 오명을 씌우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고 (...) 그의 작업에는 과학적인 속성이 부재하다”라며 슈망의 손을 들어줬다²⁾. 2018년 4월, 파리 항소법원 역시 저널리스트가 포리슨을 ‘진실 날조자’로 규정한 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의 역사상 상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하는 ‘진실 적시로 인한 예외’라고 판결했다(Le Monde, 2018, 10, 22).

2) TGI Paris, 6 juin 2017, n° 14356000489.

(3) 차별·혐오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차별과 혐오 혹은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증상, 명예훼손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옹호는 언론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별적 명예훼손이나 증상의 경우, 그 형벌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1만2천 유로의 벌금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8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혹은 장애를 이유로 증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경우, 언론법 제24조에 의거,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명예훼손이란 “특정 지역·집단 출신 여부 혹은 특정 민족·국가·종교 소속 여부에 따라 개인 혹은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별, 혐오 혹은 인종주의적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1년의 징역과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고 1천5백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열거한 성차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이처럼 프랑스 언론법은 차별, 혐오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을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반유대주의적 혹은 반이슬람주의적 혐오 발언의 급증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테러 선동 및 옹호 메시지처럼 온라인을 이용해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유포한 경우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증상

(1) 증상의 구성요소

언론사에 적용되는 증상행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언어 표현을 통한 증상을 의미한다. 언론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상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모욕적인 표현, 즉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한 경우다. 증상에 대한 소송에서는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는 유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증상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처벌의 경중은 공연성 여부와 증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도발을 먼저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일반 개인인지 혹은 공무원 또는 기관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컨대 피해자가 단순한 개인일 경우 벌금은 1만2천 유로이지만, 공직(공무원, 군인, 법관, 정부관료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만5천 유로로 높아진다. 아울러 공연한 증상인지 비공개적인 증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비공개적인 증상의 경우 38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차별·혐오 발언에 의한 증상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차별 혹은 혐오 발언에 의한 증상은 언론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언론법 제33조는 인종차별적 혹은 반유대주의적 증상과 관련된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증상이란 “특정 지역·집단 출신 여부 혹은 특정 민족·국가·인종·종교 소속 여부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한 개인 혹은 한 그룹에게 그들이 속한 종교를 이유로 증상을 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교적 비판, 신성 모독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세속주의 사회이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종교적 숭배 대상을 재현할 자유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 및 시민권법이 제정되면서 언론법 제33조 제3항에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혹은 비소속,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증상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 대해 형벌을 가중시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전에는 6개월의 징역과 2만2천5백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1년형과 4만5천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개적인 증상과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3개월 후에 시효가 만료된다. 즉, 관련 기사가

발행된 지 3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종, 민족 또는 종교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중상을 한 경우에는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적 대응을 위한 2004년 3월 9일법(Loi portant sur l’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일명 ‘페르뱅(Perben)법’에 따라 시효 만료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4. 모독

프랑스 대통령, 외국의 국가원수 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언론법 제2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다. 모독은 프랑스 판례에 의하면 “선출 전 대통령의 사생활뿐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임무 수행을 이유로 대통령의 명예나 존엄성이 훼손되는 성격의 모욕이나 멸시의 표현, 중상적 비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³⁾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민법 혹은 형법에 의해 벌금을 물거나 배상해야 했으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4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3년 8월 5일 폐지되었다.

사실 모독 조항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인지, 또한 중상이나 명예훼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박진우, 2007). 판례에 따르면 모독은 중상 및 명예훼손의 사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만평이나 사진 이미지를 통한 당사자의 존엄성이나 신중함을 공격하는 경우 또한 해당된다.

모독 조항은 드골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6번 적용되었으며, 1981년 미테랑의 집권 이후 사실상 적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재임 기간에 부활했다. 2008년 8월,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Casse-toi, pauv’ con!)⁴⁾” 사건으로 당시 사르코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에르베 에옹(Hervé Eon)이 기소되

3) Cass. Crim., 1966년 12월 21일, Bull crim. no 302.

4) 2008년 2월 23일, 프랑스의 가장 큰 박람회 중 하나인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사르코지는 수많은 인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던 중 악수를 청한 한 사람에게 “안 돼. 나는 만지지 마! 날 더럽히지 마!”라고 거부당하자, “그럼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라고 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저널리스트에 의해 비디오로 촬영된 이후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돼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여당이었던 대중운동연합(UMP)은 대통령에 대한 ‘린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었고⁵⁾, 2009년 11월 4일의 판결에서, 파기원은 에옹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옹은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30유로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년 3월 14일 에옹 대 프랑스 판결에서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Le Monde, 2013, 3, 14).

2013년 5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형법을 유럽연합(EU)의 7개 문안 및 다양한 국제법에 맞게 다듬은 법안을 마련했고, 이후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언론법 제26조는 폐지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사회당의 마리에타 카라만리(Marietta Karamanli)는 “만약 공화국 대통령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관습법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완벽하게 비생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Le Monde, 2013, 5, 15). 공화국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과 같이 일반법을 통해 고소가 가능하기에 이 법조항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는 폐지됐지만, 외국의 수반이나 외국대사, 외국 외무부장관이나 프랑스 정부가 공인한 외교공무원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언론법 제37조에 의거,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1) 재판 및 수사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식 자료(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검사의 기소장 및 기타 모든 형사소송 혹은 경범죄 재판 관련 문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공개 법정에서 밝히기 전에 기사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언론법 제38조는 저널리스트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경찰이나 검찰의 비공개 자료 혹은 비밀정보를 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 2008년 8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 지방도시를 방문했을 때, 영접 인파 속에서 에르베 에옹이 “그럼 꺼져, 빌어먹을 새끼야!”라는 표현이 적힌 작은 팻말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파트리샤 투랑쇼(Patricia Tourancheau)가 보도한 살인사건 관련 기사다. 당시 투랑쇼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명의 용의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투랑쇼와 당시 리베라시옹의 편집국장이었던 세르쥬 쥘리(Serge July)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10만 프랑(약 1,525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언론법 제38조가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위배된다면서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11월 24일 프랑스 대 쥘리와 투랑쇼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법 제38조의 규정은 “재판일까지 모든 형사소송 및 경범죄 재판 과정의 보도를 금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 보도로 인해 용의자들의 평판과 권리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재판부 구성원들의 공정한 재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재판소는 신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타인의 평판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결론지었다⁶⁾.

다만 언론법 제38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소송의 분석이나 논평을 금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내용이 수사나 소송 절차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관련 보도를 일절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법 제38조 제2항은 사법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활동 및 결정 일체에 대한 보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법부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법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기사화할 수 있다.

6) 사건번호 53886/00, 2005년 11월 24일 프랑스 대 투랑쇼와 쥘리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문 (Arrêt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ffaire Tourancheau et July c. France, requête n° 53886/00 du 24 novembre 2005).

(2) 용의자 및 범죄희생자의 이미지 전달 금지

언론법은 재판 및 수사의 대상자와 관련한 이미지나 범죄 희생자의 이미지, 혹은 사법 재판의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언론법 제35조의 부록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소송 중인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거나 혹은 구금에 처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6월 16일 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⁷⁾, 이른바 ‘기구(Guigou)’법에 의해 언론법 제35조에 삽입된 것이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해당 범죄자(범죄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나아가 그가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 혹은 구속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를 배포한 자에게 1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구법은 범죄 희생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미지의 배포 역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발생한 클로드 에리낙(Claude Erignag)의 피살 사건에 대한 이미지 보도다. 1998년 2월, 코르시카의 도지사였던 에리낙은 코르시카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당시 주요 언론들은 도로에 놓여있던 그의 시신을 찍어 앞다투어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시신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1년 2월 20일 대법원은 시신일지라도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이미지 전달은 언론법 제35조에 의해 1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사법 재판 시 사진 촬영 역시 금지되어 있다. 언론법은 법정에서 들어선 청중에게 녹음, 촬영, 전송이 가능한 모든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법 제38조 부록 조항에 따르면, 이런 장치를 통해 촬영되거나 녹음된 이미지나 음성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장치들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압수할 수 있고, 해당 촬영 및 녹음의 원본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 전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 혹은 검찰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진 촬영을 허락할 수 있다.

7)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6. 선동

(1) 범죄 및 일탈의 선동

언론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및 일탈의 선동’은 직접 선동과 간접 선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 선동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법 제23조에 의거, 이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연설이나 발언, 위협, 또는 글이나 인쇄물, 조각, 그림, 판화, 사진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선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언론법 제23조는 또한 언론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선동하여 실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는 물론이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행해졌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결과를 초래한 선동의 경우, “선동한 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선동된” 사람의 공범으로 인식된다. 이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선동 사실과 선동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의 밀접한 연관과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선동의 의도성, 즉 다른 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선동을 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범죄 혹은 경범죄를 다루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선동이 비록 직접적인 것이었지만 범죄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언론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선동 내용이 다음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의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언론사는 징역 5년 및 4만5천 유로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 및 일탈.

(2) 범죄에 대한 옹호

언론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실질적으로 선동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심각한 범죄를 칭송할 만한 고귀한 행동으로 표현한 경우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한다. 이 행위는 일반 범죄행위에 대한 옹호와 수정주의적 발언으로 분류된다.

‘옹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이것이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공개적인 옹호는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옹호적 발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범죄적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은 이를 소개하면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처럼 정당화하거나 혹은 영광스럽고 칭송할 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reyer, 2018).

언론법 제24조 제3항은 언론이 심각한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혹은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적군과의 내통 범죄를 옹호한 경우에는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끔찍한 행위를 옹호하는 의견을 배포한 경우에도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처벌하고 있다.

오랫동안 ‘옹호’에 대한 처벌은 제한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2014년 11월 13일 대테러법이 발효되면서 테러 옹호 메시지가 테러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용의자에게 즉각적인 출두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적 공간에서의 테러 선동 및 옹호 발언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테러 행위를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메시지를 포스팅한 경우, 관련 메시지뿐 아니라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테러 옹호 메시지는 언론법 제24조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이 급증하는 테러 옹호 메시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입법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변화했다. 언론법 제24조에 따르면 테러 옹호 메시지를 유포한 경우, 5년의 징역과 4만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테러법에 따라 개정된 형법 제421-2-5조는 테러 옹호를 “테러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이 행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고 “5년의 징역과 7만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행위의 선동이나 옹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테러 선동과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를 선동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프랑스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사이트 역시 검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테러를 옹호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가혹하다. 이 경우 최고 10만 유로의 벌금과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테러 옹호 메시지로 인한 유죄 판결은 2015년 1월 샤를리 엡도 테러 이후 급증하고 있다. 샤를리 엡도 테러와 관련된 소송은 251건이었는데, 이중 117건이 테러 옹호 및 선동 발언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L'express, 2015, 1, 20).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유명 코미디언 디유도네(Dieudonné)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샤를리 엡도 테러가 일어난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샤를리-쿨리발리’인 것처럼 느껴진다”⁸⁾는 글을 남겼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파리고등법원은 2016년 6월 21일 디유도네에게 집행유예 2개월과 1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앵수미즈 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스테판 푸시에(Stéphane Poussier)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2018년 3월 23일 프랑스 남부 오드(Aude)지역 테러 당시 사망한 경찰관의 죽음을 자축하는 메시지를 올린 이유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Gamba, 2018, 3, 30).

(3) 수정주의적 발언

‘수정주의(négationnisme)’란 역사적 사실을, 그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발언은 1990년 7월 13일 제정된 이른바 게소(Gayssot)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유태인 학살과 인종학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반유태주의 및 타인종 혐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며, 언론법 제24조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발언으로 게소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이는 로버트 포리슨(Robert Faurisson)이다. 수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그는 오랫동안

8) 이 표현은 프랑스 시민이 샤를리 엡도 테러 희생자와 연대를 위해 외치는 “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에 같은 날 파리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의 인질을 살해한 지하디스트 쿨리발리 이름을 교묘하게 엮은 것이다.

프랑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1960년대 초반부터 유대인 대학살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⁹⁾. 그는 1990년 9월, 월간지 르 속 뒤 무와(Le Choc du mois)와의 인터뷰에서 나치 강제수용소의 가스실 존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11개의 레지스탕스 협회와 옛 나치 수용소 수감자들은 포리슨과 르 속 뒤 무와(Le Choc du mois)의 편집국장 보와조를 고소했고, 1991년 4월 13일 파리 지방법원은 두 피의자 모두 “반인류 범죄를 부인한 혐의에 있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326,832프랑의 벌금형이 내려졌다(Dhommeaux, 1997). 이 사건은 이후 르 속 뒤 무와의 발행이 중단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III.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책

프랑스에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관할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는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를 사법부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제도의 근본 원칙은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른다 해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적 판결을 통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국가나 언론계 모두가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론사가 언론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 구제절차는 보통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몇몇 위배행위에 대한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저널리스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박진우, 2007). 그런데 1990년대부터 언론 관련 소송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업 현장에서 직업윤리를 제대로 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9)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나치가 인종 몰살의 목적으로 가스를 살포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윤리위원회’ 창설 논의 역시 이러한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자체적인 직업 규율을 통해 자신들의 오류나 비윤리적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¹⁰⁾. 그러나 프랑스 미디어의 소유구조와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사이트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는 허위정보 등으로 인해 ‘정보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저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작업 방식을 성찰하고, 저널리스트와 시민, 언론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언제 설립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독자들이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행사 가능한 권리로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다.

1. 반론권

프랑스의 반론권(le droit de réponse)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 반론권이 법제화된 것은, 대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기에 신문 수가 늘어나고 발행부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질적인 비방과 공격으로 개인의 명예나 신용이 침해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김병국, 2002). 이러한 배경 하에서 1799년, ‘500인 회의(Le Conseil des cinq-cents)’에서 언론에 의해 명예를 침해당한 자에게 반론 기사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이 제시되었다.

1881년 언론법 제13조에 명시된 반론권 조항은 모든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독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립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자 부분 개정을 통해 방송에 대한 반론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또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가능하다.

10) 프랑스는 각 매체 유형별 저널리스트 노조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다. 이들은 단지 저널리스트 지위의 문제뿐 아니라 저널리스트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저널리스트 노조(SNJ)가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저널리스트 윤리강령을 마련해 저널리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약으로 규정한다거나, 인터넷 독립 언론 노조(SPIII)가 인터넷 독립 언론들이 보다 건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독립 언론들의 직업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반론권 개시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과 그 절차는 언론법 제13조와 제13-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도 2007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¹¹⁾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IV조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행사 조항을 삽입하면서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다.

반론권은 일간지 및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모든 매체, 즉 모든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사자(死者)에게까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사실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논평, 르포기사, 의견, 가치판단 등 모든 종류의 기사가 반론대상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사에 자신이 거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론권의 개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반론권은 영상매체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역시 오랫동안 반론권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왔다(Simonnot, 1996, 6, 11). 그러나 반론권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1990년대 이후부터는 관련 판례가 반론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4년 파리 항소법원이 반론권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한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2) 반론권의 행사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권은 언론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기사가 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¹²⁾. 방송에 대한 반론권 역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3개월 이내에 행할 수 있다.

독자 혹은 시청자의 반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경우, 언론사의 발행인에게 이를 게재할 의무가 생긴다. 인쇄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은 반론권을 야기한

11) ‘Décret n° 2007-1527 du 24 octobre 2007 relatif au droit de réponse applicable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12) 원래는 1년이었으나 2000년 6월 15일 방송과의 형평성을 위해 3개월로 변경되었다.

해당 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길이로 제한되며, 최소 50줄에서 최대 200줄로 제한된다. 즉 문제가 된 기사의 길이가 200줄을 넘긴 경우라도, 반론문은 최대 200줄까지만 게재 가능하다.

방송의 경우, 1987년 방송법 시행령¹³⁾에 의거, 반론문의 텍스트는 30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 메시지의 방송 시간은 2분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방송에 대한 반론권 개시는 다른 매체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킨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은 반론 청구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주간지 이상의 정기간행물은 접수 다음날로부터 가장 최신 호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만약 그 사안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에 한해 24시간 이내에 반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 제6-IV조에 따르면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제2004-496호의 결정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된 조항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방송의 경우, 방송 책임자는 반론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반론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론권을 야기한 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반론을 방송해야 한다(1987년 방송법 시행령 제5조). 반론문의 형식은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기술적 조건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해야 하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송 날짜 및 시간을 자막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반론 게재 거부시 양형 기준

언론매체는 반론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전체 내용을 게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혹은 규정된 형식으로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언

13) 'Décret n°87-246 du 6 avril 1987 relatif à l'exercice du droit de réponse dans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론사 발행인은 1881년 언론법 제13조에 의거(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 제6-IV조에 의거), 3개월의 금고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 기한 내에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거부한 경우, 반론청구인은 반론문 게재 거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언론매체가 법적으로 반론을 게재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에 의해 관련 언론사에 반론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는 약식기소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반론청구인은 자신의 반론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반론문이 지나치게 길거나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언론사 발행인에게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론 게재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아울러 반론문이 법에 저촉되거나,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저널리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Deryer, 2018: 477).

또한 반론은 그것을 야기한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반론권을 “정보의 모순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저널리스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표현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¹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은 사실 혹은 의견에 대해서만 반론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언론사 발행인은 해당 기사와의 상관관계가 부분적으로 없는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언론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일은 드문 반면, 상업적 언론의 등장으로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반론권의 행사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논평과 의견에 대한 ‘논쟁적 반론’보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적 착오, 즉 오보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정적 반박’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가고 있다(김병국, 2002).

14) TGI Nanterre, 17 avril 1996, JD n° 604164.

2.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과는 별개로 언론법 제12조는 공권력의 보유자(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즉 정부 기관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잘못된 기사가 발행됐을 때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공권력 집행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김병국, 2002).

정정보도청구권은 현행법상 인쇄매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다룬 법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진우, 2007). 또한 인쇄매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개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언론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장 최신 발행호의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해야 하며, 그 크기가 “관련 기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프랑소와 미테랑이 집권한 이후 정부의 국내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중지는 당시 미테랑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고, 이후 프랑스 정치권의 관례로 자리잡으면서, 그 어떤 후임 대통령도 프랑스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해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존재한다(박진우, 2007). 초기에는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이 너무 “개인의 법익보호에 편중되어 언론매체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 이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반론권 행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역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에 대한 반론권이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김병국, 2002).

IV. 언론법 개정의 최근 동향

1.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개정된 언론법의 주요 내용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의 제정은 상당한 진통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로 2016년 4월 13일 하원에 최초로 제출된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2017년 1월 27일 법으로 공포되기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수차례 심의 및 위원회의 소집이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안문희, 2017). 2016년 10월, 르몽드, 르피가로, 레제코, 미디어파르트를 비롯한 26개 언론사들과 법조 저널리스트 협회, 사회 정보 분야 저널리스트 협회, 경제와 금융 정보 분야 저널리스트 협회 등은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안의 내용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일제히 비판했다(Le Monde, 2016, 10, 14). 상원 및 하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¹⁵⁾.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16년 12월 27일 해당 법안의 채택과 관련한 절차 및 해당 법안의 몇몇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60명의 상원의원과 60명의 하원의원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2017년 1월 26일 부분적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로부터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가결되면서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이 2017년 1월 27일 제정되었다(안문희, 2017).

평등 및 시민권법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이 규정하고 있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몇몇 부분을 개정하게 했다. 명예훼손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성(sex)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젠더(gender) 정체성’으로 대체하였고, 인종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두 배로 가중했다. 또한 인

15) 논쟁이 된 조항들은 먼저 시효에 관한 것이다. 1881년 언론법은 언론 기사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의 기사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기간 규정이 충돌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은 언론인의 방어권 상실에 있다. 예전에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졌다. 그러나 평등과 시민권에 관한 법안은 판사 또는 검사가 위반되는 사항을 찾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언론인은 자신에게 소가 제기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 방어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비판 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언론 기사나 논평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이러한 책임은 해당 기사나 논평으로 인해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론 이러한 손해에 대한 인정을 전문적 언론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언론사가 누락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안문희, 2017).

류애에 반하는 노예제도와 같은 특정 범죄의 축소, 선동 또는 일반화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성차별 관련 혐의 재심리 가능성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언론법 제54-1조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언론법 위반 시 피고소 대상의 과죄가 기소 행위에 의해 확정되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인종차별적 명예훼손, 인종차별적 중상 및 인종 차별적 혐오에 대한 선동 혐의에 한해 재심리가 가능하다. 동성애 혐오 및 성차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24조 제8항). 그러나 단체, 공무수탁사인 및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위임자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및 중상을 포함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심리가 여전히 불가능하다(Légipresse, 2017).

(2)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또는 성차별주의자의 명예훼손 시 명예훼손 사실의 증거 제공 가능성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 증거 제공에 관한 언론법 제55조가 보완되었다. 제55조는 차별적 동기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혐오 유발 및 중상으로 죄목이 부과된 범법행위를 재심리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언론법 제35조에 의거, 명예훼손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성애 혐오나 성차별,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성격의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증거 제출은 일체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2017년 1월 26일의 결정(2016-745 DC)에서 변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였다(Légipresse, 2017).

(3) 협회의 행동할 권리

평등 및 시민권법에 의해 언론법 제48-1조가 개정되고 제48-1-1조가 추가되었다. 제48-1조에 의거,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인종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인종차별적 중상 혹은 인종차별적 범죄나 범법행위를 행하도록 선동한 경우 협회 혹은 단체가 손해배상 청구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아울러 언론법 제48-1-1조로 인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제 제24조 및 제 24조 제2항에 규정된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및 노예화 범죄의 보편화, 축소, 부정 및 찬양의 범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48-2조 또한 개정되어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류 범죄 희생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거나 또는 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를 옹호 혹은 부인하는 행위에 맞서 시민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égipresse, 2017).

(4) 몇몇 처벌의 추가 및 수정

평등 및 시민권법은 언론법 제24조 제2항에 “반인류 범죄, 노예화 및 노예로 전락한 사람에 대한 착취 및 전쟁 범죄를 부정, 축소, 보편화한 이들에게” 징역 1년 및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벌을 추가했다. 또한 언론법 제24조, 제32조 및 제 33조에 규정된 범죄(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혹은 비소속,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중상 혹은 명예훼손,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혹은 노예가 된 사람의 착취, 적군과의 내통 범죄에 대한 옹호 혹은 선동,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는 범죄 및 일탈에 대한 옹호 등)에 대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보완적 처벌을 추가했다(Légipresse, 2017).

(5)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개정

인종차별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외에도, 이 법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지위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loi du 30 septembre 1986 portant statu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1월 27일 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에 대해서 동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교양, 독립성, 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방송국들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A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성의 표출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지를 감독하게 했으며, CSA에게 광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나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존중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안문희, 2017).

V. 정보조작대처법과 언론평의회 창설

1. 정보조작대처법

2018년 11월 20일 프랑스 하원은 선거기간의 허위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조작 대처에 관한 법안들(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이하 정보조작대처법)’을 통과시켰다. 상원에 의해 지난 7월 26일과 11월 6일 두 번 연속 부결된 법안들이 긴 진통 끝에 가결된 것이다.

마크롱의 중도신당 LREM(전진하는 공화국, 308석)과 Modem(민주노동당, 42석)의 다수파 여당 연합의 활약으로 선거기간 내의 허위정보는 강력한 법적 규제 하에 놓이게 됐다. 나머지 좌·우파 정치세력은 이 법안들을 “쓸모없고”,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정보조작대처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조직법 차원에서 발의됐다. 즉, 허위정보 대처에 관한 통상법에 의해 이미 확립된 법적 조치들을 대선 캠페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 선거 방식은 조직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조직법의 개정안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하나는 통상법의 범주에서 선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들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기간(선거 이전 3개월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허위정보의 배포를 판사가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사적인 정보는 그것이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혹은 언론이 보도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

지시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판사가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조작대처법에 의해 삽입된 선거법 제 163-2조에 의하면, 판사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정보는 “‘명백하게 허위’여야 하고, 인위적이며, 대량으로 배포되어야 하며”, “다가오는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사실의 주장이나 비판”이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의 기구들,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이러한 정보에 대해 판사가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CSA는 한 외국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서비스’가 허위정보의 유포를 통해 국가 기관의 일상적인 기능을 포함, 국가의 기본 이익을 해친다면, 그 국가의 영향 아래 통제 되는 방송서비스에 한해, “방송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정보조작대처법은 허위정보와 맞서 싸우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의무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이들이 수수료 받는 콘텐츠, 즉 광고콘텐츠에 한하여 그것이 공적 토론과 관련이 있는 정보라면 이 정보의 대규모 배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외에도 이 법은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 사용 방식, 비판적으로 정보 읽기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2. 정보조작대처법을 둘러싼 논란

이 법이 통과되기 앞서 대다수 언론사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야당 정치인은 이 법안에 대해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 법안을 둘러싼 주요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위정보 정의의 모호함

이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허위정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허위정보의 정확한 정의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범죄 및 형벌의 합법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화교육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법안은 허위정보를

“거짓정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가 부족한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이나 비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검열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풍자적인 주장도 판사에 의해 허위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발언이 “다가오는 투표의 진정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 허위정보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법안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선거기간(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정보”를 공표한 경우, 판사는 긴급하게 플랫폼에 “허위정보의 배포를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이후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관련 콘텐츠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파급력이 크긴 하지만, 48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유럽민주사회연합(RDSE)의 의원들은 “공표된 정보들이 모두 허위이고, 그것들이 인위적이고 자동적으로 배포가 됐다면, 판사가 48시간 내에 이를 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판사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이러한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앙수미즈(France Insoumise)의 소속 의원들은 “허위정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판사 혼자서,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사안을 이해하고,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적어도 72시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공화당은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면서 24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Rees, 2018, 11, 6).

그러나 전문가들은 72시간이든 48시간이든 판사에게 이런 권한을 맡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연구소의 교수인 아르노 메르씨에(Arnaud Mercier)는 “판사에게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영

역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보의 진실성 입증은 법관의 영역이 아님을 강조했다(Carasco, 2018, 11, 22).

정치학자 제랄딘 뮐만(Géraldine Muhlmann)은 관련 판사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881년 법의 범위 내에서 형사판사가 “허위 뉴스”를 규정해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이 새로운 법적 조치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1881년 언론법은 저널리스트에게 ‘취재원 보호법’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Muhlmann, 2018, 8, 9).

(3) CSA의 권한 확대

법안은 CSA에 정보 조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CSA에게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 TV 방송이 프랑스의 근본적인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 이들의 증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CSA의 행정적 권한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제랄딘 뮐만은 “CSA가 ‘통제 하에’ 있거나 ‘외국의 영향력 아래’,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채널과 사이트에서 정보 게시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외국 출판물을 국내 출판물처럼 취급한다는 1881년 언론법의 외국 발행물 취급 조항에 대한 예외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Muhlmann, 2018, 8, 9).

좌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인터넷에서 CSA의 권한 확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각 콘텐츠의 규제 원칙을 인터넷에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시청각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따라서 임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영향력”으로 판단할 어떤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향력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Rees, 2018, 11, 6). 아울러 이 조항은 선거기간이 지나더라도 유효하다. CSA는 “관련 서비스가 허위정보의 보급을 통해 기관의 정규 운영을 포함하여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의무’ 조항의 문제

이 조항은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의 홍보와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제안된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 추천, 배열 또는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 몇몇 특정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 협력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은 ‘전자상거래의 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00/31/EC)¹⁶⁾에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책임 규정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디렉티브가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유럽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한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에 의한 자율적인 형태를 띤) 검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좌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검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가 독일처럼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회사들은 차라리 엄청난 검열을 선호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Rees, 2018, 11, 6).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트위터 등 주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모여 만든 협회인 ASIC(Association des Services Internet Communautaires,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협회) 역시 지난 10월 CNIL(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과 유럽위원회에 이 조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Rees, 2018, 10, 22). 이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상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요한 투표를 앞둔 선거기간 동안, 정보조작대처법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기금을

16) 공식명칭은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이다.

지불한 이의 신원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SIC은 “이 의무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인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자연인의 신원에 관한 투명성에 대한 의무는 기존의 법률과 상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규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 정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성격의 정보 콘텐츠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 이미 존재하는 허위정보 관련법과의 관계

허위정보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조작대처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허위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허위 뉴스를 규제하는 언론법 제27조가 대표적인 조항이고, 아울러 선거법 제97조는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규제하고 있다¹⁷⁾.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 의원 브뤼노 스투더(Bruno Studer)는 이 법안이 1881년 제정된 언론법을 시대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허위정보가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법 27조가 실질적으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무력한 조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선거기간 동안 인위적이고, 대량으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법 전문 변호사인 바질 아데르(Basile Ader)는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1881년 언론법으로도 지금 벌어지는 허위정보를 둘러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법의 허위 뉴스 전달과 명예훼손 범죄 조항으로도 선거기간 동안의 허위정보에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 뉴스가 공공의 안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이를 기소할 수 있는데, 바로 선거 결과에 관한 허위 뉴스가 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언론법은 선거기간에 한해 그러한 허위 뉴스에

17) 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허위뉴스, 비방적인 소문 혹은 다른 사기 조작을 통해, 선거를 중단시키거나 선거의 향방을 바꾸거나 혹은 유권자의 기권을 유도”한 경우, 1년의 징역 및 1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해 긴급한 조치를 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정보의 경우, 그것이 개인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일이다”라고 주장한다(Le Nouvel Observateur, 2018, 1, 4).

게다가 제랄딘 뢰만은 언론법의 허위 뉴스 조항의 경우처럼, 정보조작대처법이 도입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처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Muhlmann, 2018, 8, 9). 명예훼손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약식기소는 판사에게 아직 확립조차 되지 않은 범죄를 가지고 잠재적 손해의 예외적인 증대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단순한 위험을 이유로 판사가 긴급하게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정보조작대처법에 대한 상원의 대응

11월 21일, 정보조작대처법이 통과된 그 다음날, 프랑스 상원의 중도파 연합(Union centriste)과 공화당(Les républicains) 그룹에 속하는 60명 이상의 상원의원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¹⁸⁾. 9명의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한 달 이내에 정보조작대처법에 관한 위헌여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정보조작대처법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법안의 합헌성과 기존 협약들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콩세이데타(Conseil d’État, 국사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부결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Rees, 2018, 11, 21). 이들의 제소장에 등장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침해

헌법위원회에 제소한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제1조, 즉 허위정보에 대한 판사의 약

18)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공포하기 전에 법률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식기소 절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으며, 불균형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사가 “투표의 진정성을 바꾸는 성격”의 허위정보의 진위여부를 48시간 내에 입증할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투표의 의미가 손상되었음을 48시간 이내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는, 사생활을 침해하지도 혹은 그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그래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주장의 유포를 제한하게 되어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확한 주장이 아니라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인, 그러나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장의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패러디나 풍자적인 정보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정보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정보들이 확산되어 미래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유럽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법률의 제정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 침해

이들은 정보조작대처법이 다른 원칙, 즉 ‘범죄와 형벌의 합법성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콘텐츠”의 광고에 지불된 금액의 출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조작대처법에 의해 새로 삽입된 선거법 제112조는 징역 1년과 7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위법행위 구성 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모호한 개념들로 인해 그 적용 대상이 공적 경제주체 혹은 정보콘텐츠의 상업적 광고에 기대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언론평의회의 창설

정보조작대처법 이외에 허위정보 혹은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언론평의회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정보조작대처를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전 이루어진 국회토론회에서 당시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프랑수와즈 닛센(Françoise Nyssen)은 ‘언론윤리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마크롱 대통령이 허위정보와 관련해 언론사들에게 직업 윤리적 ‘성찰’을 주문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언론의 자율적 감시기관으로서 언론평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7년 12월 5일, 프랑스의 좌파연합을 이끄는 장 퓌크 멜랑송이 객관적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언론이 침해하지 않도록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설치를 청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Herreros, 2017, 12, 18). 당시 서명자는 2017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16만 명을 넘어섰다.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나 르포, 토론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하거나, 대중을 속이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언론 불신을 이유로 프랑스에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6년에는 APCP(Association pour la Préfiguration d'un Conseil de Presse, 프랑스 언론평의회준비협의회)가 마련된 적이 있었고, 2014년 ODI(Observatoire de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 정보윤리관찰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저널리즘 행위자들 역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13일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에게 제출된 마리 시리넬리(Marie Sirinelli, 2014)의 보고서, ‘정보의 자기 규제: 어떻게 윤리를 구현할 것인가?’ 또한 언론평의회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인들의 자율규제와 공적기관의 개입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파리1대학 교수인 도미니크 칼리파(Dominique Kalifa)에 의하면 이 두 축의 불균형, 그 개입 속성의 문제(권고적 속성인가 아니면 강제적 속성인가의 여부), 그리고 언론인들 간 동의의 부재로 인해 언론평의회는 창설되지 않았다(Kalifa, 2018, 10, 10).

영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평의회가 독립적인 윤리 및 중재기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저널리즘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평의회 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역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언론평의회 창설 책임자는 AFP의 전 사장인 엠마누엘 오그(Emmanuel Hoog)가 맡았다. 명칭을 대다수의 나라들처럼 ‘언론평의회(Conseil de presse)’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이름에 반영한 벨기에처럼 ‘저널리즘 윤리위원회(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평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ODI 소장 파트릭 에브노(Patrick Eveno)를 비롯해 프랑스에서 언론평의회 창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언론평의회 모델은 언론인, 언론인 노동조합과 언론인 협회, 언론 매체 그리고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관이며, 언론사, 편집국 그리고 시민 사이의 중재기관인 동시에 전문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성찰 및 협의의 기구이다. 이들은 언론평의회가 정치기관도, 행정기관도, 협동조합 형식도 또는 언론 규제 기관도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인과 언론의 법원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관한 언론과 일반 대중 간의 중재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Mindnews, 2018, 10, 23).

언론평의회는 대중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스스로 언론의 문제를 파악해 자율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편집 방향이나 편집 선택에 관한 모든 불만 사항은 기각하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불만 사항(예를 들어 명예훼손, 중상 등)은 제외하고 저널리즘의 실천에 있어서의 직업윤리 존중과 관련한 불만들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평의회는 형사적 처벌이나 재정적 제재 등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언론평의회 사이트나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언론사에게는 실질적인 제재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 평의회 창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디어 전문가, 장 마리 샤롱(Jean-Marie Charon)은 언론평의회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언론에 대한 심판 기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면서, “편집국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언론인들에게 있으며,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실책을 해결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언론평의회를 구성할 사람들의 대표성 문제, 정부와 정치인 주도로 설

립된 중재기관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Duroch, 2018, 10, 12).

VI. 마치며

프랑스의 언론법은 오랫동안 ‘언론 자유의 남용’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완벽한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언론법의 개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평등 및 시민권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정된 언론법은 인종이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뿐 아니라 성적 취향, 장애로 인한 차별,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등 혐오를 조장할 만한 다양한 차별적 발언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법의 개정이 비판적인 표현마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테러 선동과 옹호 메시지에 대한 처벌이 그런 사례다. 테러 선동과 옹호 메시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선동과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검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조작대처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로 인한 처벌 역시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몇몇 법적 조치들은 오히려 이를 위협에 빠트리거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헌법위원회에 제소됨에 따라 이 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이를 시도하는 나라들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행본

- Bilger, P. (2003). *Le droit de la presse*. Paris: PuF.
Dreyer, E. (2018). *Droit de la communication*. Paris: LexisNexis.

논문

- 김병국 (2002). 한국과 주요국가의 반론권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3), 43-69.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겨울호, 52-64.
안문희 (2017).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랑스민법상 사생활보호. <법학논총>, 39, 61-80.

Dhommeaux, J. (1997). Liberté d'expression et négationnisme. La Loi Gaysot et le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Revue Juridique de l'Ouest*, Vol.3. 251-264.

Sirinelli, M. (2014). Autorégulation de l'information: Comment incarner la déontologi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URL: <https://www.ladocumentationfrancaise.fr/var/storage/rapports-publics/144000105.pdf>

온라인 기사

- Bardo, A. (2018, 11, 5). Loi sur les fake news : le Sénat rejette à nouveau le texte. <Public Sénat>. URL: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arlementaire/loi-sur-les-fake-news-le-senat-rejette-a-nouveau-le-texte-135105>
Carasco, A. (2018, 11, 22). Les députés adoptent les textes controversés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La Croix>. URL: <https://www.la-croix.com/Economie/Medias/deputes-adoptent-textes-controverses-contre-manipulation-linformation-2018-11-21-1200984518>

- Duhen, W. (2010, 12, 29). Diffamation, une infraction de presse sur Internet. <Droit & Technologie>. URL: <https://www.droit-technologie.org/dossiers/diffamation-une-infraction-de-presse-sur-internet/>
- Duroch, A. (2018, 10, 12). Faut-il créer un conseil de déontologie de la presse en France? <Le Journal du Dimanche>. URL: <https://www.lejdd.fr/Societe/faut-il-creer-un-conseil-de-deontologie-de-la-presse-en-france-3777188>
- Gamba, D. (2018, 3, 30). Apologie du terrorisme : que prévoit la loi ? <Europe1>. URL: <http://www.europe1.fr/societe/apologie-du-terrorisme-que-prevoit-la-loi-3613634>
- Goetz, D. (2017, 6, 12). Diffamation : négationnisme et reconnaissance de l'exception de vérité. <Daloz Actualité>. URL: <https://www.daloz-actualite.fr/flash/diffamation-negationnisme-et-reconnaissance-de-l-exception-de-verite#.W-waBDgzaUk>
- Herreros, R. (2017, 12, 18). Mélenchon profite de l'interview de Macron par Delahousse pour promouvoir son conseil de déontologie du journalisme. <Huffingtonpost France>. URL: https://www.huffingtonpost.fr/2017/12/18/melenchon-profite-de-linterview-de-macron-par-delahousse-pour-promouvoir-son-conseil-de-deontologie-du-journalisme_a_23310742/?fbclid=IwAR0yLenHWPXZKpGMjbQnSKlXbVytmB2yNxd6F3DWfv91-sQiPZUtaCrRpxA
- Jacquot, G. (2018, 3, 26). Lutte antiterroriste: comment la législation a évolué au cours des 5 dernières années. <Public Senat>. URL: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olitique/lutte-antiterroriste-comment-la-legislation-a-evolue-au-cours-des-5-dernieres>
- Kalifa, D. (2018, 10, 10). Médias : de 1881 aux fake news, l'obsession de la régulation. <Libération>. URL: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8/10/10/medias-de-1881-aux-fake-news-l-obsession-de-la-regulation_1684519
- Légipresse (2017, 1, 6). Modification de la loi de 1881 par la loi Egalité et citoyenneté: en attendant le verdic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345. URL: <http://www.legipresse.com/011-48956-Modification-de-la-loi-de-1881-par-la-loi-Egalite-et-citoyennete-en-attendant-le-verdict-du-Conseil.html>
- Le Monde (2013, 3, 14). Affichette "Casse-toi pov' con": la France condamnée par la CEDH.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3/>

- 03/14/affiche-casse-toi-pov-con-la-france-condamnee-par-la-cedh_1847686_3224.html
- Le Monde (2013, 5, 15). Le délit d'offense au chef de l'Etat abrogé.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05/15/le-delit-d-offense-au-chef-de-l-etat-abroge_3241977_823448.html
- Le Monde (2016, 10, 14). Loi égalité et citoyenneté : «Le Sénat poursuit sa guerre contre la liberté d'expression».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6/10/14/loi-egalite-et-citoyennete-le-senat-poursuit-sa-guerre-contre-la-liberte-d-expression_5013686_3236.html
- Le Monde (2018, 10, 22). Robert Faurisson, dernière figure du négationnisme, est mort.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disparitions/article/2018/10/22/le-negationniste-robert-faurisson-est-mort_5372781_3382.html
- Le Nouvel Observateur (2018, 1, 4). Fake news: la loi permet déjà en France de sanctionner, assure un avocat du barreau de Paris. <Le Nouvel Observateur>. URL: <http://www.nouvelobs.com/en-direct/a-chaud/45658-fakenews-macron-permet-france-sanctionner-assure-avocat.html>
- Mindnews (2018, 10, 23). “Un conseil de presse est l'une des réponses aux tentatives de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en ligne”. <Mindnews>. URL: <https://www.mindnews.fr/article/13477/un-conseil-de-presse-est-l-une-des-reponses-aux-tentatives-de-manipulation-de-l-information-en-ligne/>
- Muhlmann, G. (2018, 8, 9). Loi sur les «fake news» : «Il faut refuser ce bidouillage juridique».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8/08/09/loi-sur-les-fake-news-il-faut-refuser-ce-bidouillage-juridique_5340670_3232.html
- Politi, C. (2015, 1, 20). Apologie du terrorisme: peines d'exception ou justice exemplaire? <L'express>. URL: https://www.lexpress.fr/actualite/societe/apologie-du-terrorisme-peines-d-exception-ou-justice-exemplaire_1642597.htm
- Rees, M. (2018, 10, 22). Loi anti-fake news: l'Asic interroge la Commission européenne et la CNIL.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199-loi-anti-fake-news-asic-interroge-commission-europeenne-et-cnil.htm>

Rees, M. (2018, 11, 6). Le Sénat rejette encore la proposition de loi contre les «fake news».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108-le-senat-rejette-encore-proposition-loi-contre-les-fake-news.htm>

Rees, M. (2018, 11, 21). Loi contre les «fake news» : à peine votée, déjà attaquée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xt Inpact>. URL: <https://www.nextinpact.com/news/107324-loi-contre-les-fake-news-a-peine-votee-deja-attaquee-devant-conseil-constitutionnel.htm>

Simonnot, D. (1996, 6, 11). Le droit de réponse, un droit à consommer avec modération. Seule une jurisprudence réfléchie peut éviter les abus. <Libération>. URL: https://www.liberation.fr/evenement/1996/06/11/le-droit-de-reponse-un-droit-a-consommer-avec-moderation-seule-une-jurisprudence-reflechie-peut-evit_174443

언론법 관련 사이트

정보 조작에 관한 대처 법안(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URL: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ta/ta0151.asp>

1881년 언론자유법. URL: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70722>

상원의 정보조작대처법 관련 헌법위원회 제소장. URL: <https://cdn2.nextinpact.com/medias/saisine-uc-lr-fake-news.pdf>